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 방 공 무 원 임 용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현장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 특별승진,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우대를 적용하는 한편,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기회 확대를 위해 5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난·민원 담당 공무원 근속승진 제도 개선(안 제33조의2)

- 1)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중인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기간을 2년까지 단축하고자 함.
- 2)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2년 이상 근무 중인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 근속승진기간을 1년까지 단축하고자 함.
- 3)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공무원이 6급으로의 근속승진하는 경우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공무원 특별승진 기회 확대(안 제38조의4)

- 1) 재난 및 안전 분야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부포상을 받은 자 등 성과가 우수한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특별승진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 기준을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다. 격무·기피 민원 담당 공무원 승진 가산점 부여 의무화(안 제32조)

고질·반복,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탁월한 실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위한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라. 승진후보자 명부의 배수범위 확대(안 별표 4)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5급 이하 승진후보자 명부의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마. 승진임용 제한 사유 규정 정비(안 제34조)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징계의결요구 중인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

7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중인 경우를 포함하여 승진 임용의 제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실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실적이 있는 경우

가.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나. 국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제33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있다”를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업무 중 임용권자가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제33조의2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징계의결요구”를 “징계의결요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38조의4제1항제2호 전단 중 “규칙으로”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거나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임용한 정원은 그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

별표 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0조제1항 및 제38조제3항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수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1명	결원 1명당 10배수
2명	결원 1명당 8배수
3명 이상 5명 이하	결원 1명당 6배수
6명 이상 10명 이하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30명
11명 이상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45명

비고: 1명의 주당 총근무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서 소수점 단위로 산정하여 정원에 나타내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결원을 1명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① 제33조의2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3조의2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임용 심의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근속승진기간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3조의2제4항제3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특별승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위하여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u>제5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u>	② ----- ----- ----- ----- ----- ----- <u>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실적</u>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업무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실적이 있는 경우 가.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나. 국민 편익 증진에 탁월한 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 ③ (생 략)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
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
축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
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
무원의 인원수는 교육부장관 또
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1. 2. (생 략)

3.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
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
으로 정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
년

<신 설>

⑤ (생 략)

⑥ 제3항에 따라 6급 공무원으
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 ----

-----.

1. 2. (현행과 같음)

3. -----

----- 2
년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민원 업무 중 임
용권자가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⑤ (현행과 같음)

⑥ -----

의를 할 때에는 연도별로 합산하여 근속승진 후보자(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7급 공무원을 말한다)의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⑦ ~ ⑨ (생략)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징계처분요구가 있거나,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

This image shows a blank sheet of white paper with ten horizontal dashed lines, typical of primary-ruled notebook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다만,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렬별 인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34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

 ----.

1. 징계의결요구(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호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생략)

② ~ ⑤ (생략)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
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
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
야 한다.

1. (생략)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
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
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 5. (생략)

② · ③ (생략)

<신설>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

-----.

1. (현행과 같음)

2. -----

-----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
-----.
-----.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

④ · ⑤ (생략)	<u>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거나 국무총리 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7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임용한 정원은 그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한 때에 소멸된 것으로 본다.</u>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44